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6.01.01.)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2,512,9000	2,331,200	1,528,500	1,409,700	1,208,900

○ 방문요양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7,450	150분 이상	50,640
60분 이상	25,320	180분 이상	57,020
90분 이상	34,120	210분 이상	63,530
120분 이상	43,430	240분 이상	70,080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비율
기초 수급권자	0%
일반 수급자	15%
기타 의료수급권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6%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9%

○ 수급자 자격별 방문요양 1회당 이용 시간별 본인부담금

방문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시간	수가	일반(15%)	경감(9%)	경감(6%)
30분 이상	17,450	2,618	1,570	1,047
60분 이상	25,320	3,798	2,278	1,519
90분 이상	34,120	5,118	3,070	2,047
120분 이상	43,430	6,501	3,908	2,605
150분 이상	50,640	7,596	4,557	3,038
180분 이상	57,020	8,553	5,131	3,421
210분 이상	63,530	9,530	5,717	3,811
240분 이상	70,080	10,512	6,307	4,204

○ 비용부담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이며, 그외 이용자는 매월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1회당 총비용, 이용 횟수, 이용자의 정해진 본인부담율을 각각 곱하여 월 이용료를 산정하여 부담한다.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항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 30%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가족요양은 제외)

○ 22시 이후 06시 이전에 급여를 제공한 경우는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가족요양,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제외)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비용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고시에 따라 정하여 진다.